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7.

발 의 자 : 조정훈 · 서천호 · 윤용근
김용태 · 최수진 · 박충권
김미애 · 강승규 · 임종득
권영세 · 조지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.

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,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·교육비의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 특히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제공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형평성·공정성 문제가 제기됨. 실제 2024년 의료비·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736만명인 반면, 개인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약 5만명에 그쳐 근로소득자의 0.7%에 불과하였음.

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,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122조의3제1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2조의3의 제목 중 “성실사업자에”를 “성실사업자 등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모두 갖춘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성실사업자”라 한다)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”를 “모두 갖춘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성실사업자”라 한다), 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(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)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”로,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2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2조의3(<u>성실사업자에</u> 대한 의료비 등 공제) ① 「소득세 법」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(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성실사업자”라 한다)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70 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 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 인서를 제출한 자가 「소득세 법」 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 (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 다)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 (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 는 100분의 20, 같은 항 제4호 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 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)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	제122조의3(<u>성실사업자 등에</u> 대 한 의료비 등 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모두 갖춘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성실사업자”라 한다), 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 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를 제출한 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(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)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 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----- ----- -----2029년 12월 31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